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- 1615호

「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29일

국토교통부장관

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리츠 시장의 성장에 따라 리츠사·자산관리회사에서 투자·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확충 및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여, 전문인력 자격범위의 확대·교육 이수 관리 강화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범위 확대(안 제5조, 제6조)

- 근무경력이 인정되는 부동산관계기관을 현행 ‘토지주택공사’에서 ‘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사’로 확대하고, 국토교통부의 관계부서도 주거복지정책관, 공공주택추진단을 추가하며, 학위요건에 ‘부동산학’을 추가하여, 전문인력의 공급 확대

나. 전문인력 교육 수료서류 보존기간 연장(안 제13조 제2항)

- 교육기관의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의무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, 전문인력 교육 이수자의 관리 강화

다. 기타 기관 명칭의 현행화(안 제8조), 교육과정에 자본시장법 추가(안 제9조), 별표와 별지서식 개정(별표 1, 별지 제1호~제6호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: 부동산투자제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/> 정책자료/ 법령정보/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

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(우편번호 30103)

☎ 044-201-4812, 3417 Fax 044-201-5538